복리후생 규정



목차

- 1. 총칙
- 2. 건강검진
- 3. 의료비 지원
- 4. 경조금 및 경조 휴가
- 5. 학자금 지원
- 6. 장기근속포상
- 7. 카페테리아
- 8. 상해보험
- 9. 개인퇴직연금(IRP)지원
- 10. 주택 자금 대출

1.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임원 및 사원의 복리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GS 소속 전 임직원에 적용됨.

2. 건강검진

1) 검진기준

구 분	검진	실시시기	
	임 원	본 인	1년 1회
주 최 기 기	H TC	배우자	1년 1회
종합검진	^{주)} 만35세 이상	직원	1년 1회
	[변 35 세 약경	배우자	2년 1회
일반검진	만34세 (1년 1회	

주) 가. 직원의 연령이 해당 될 경우, 배우자에게도 적용 됨

나. 상기의 검진외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독감 예방 접종 등) 별도 품의에 의해 검진 할 수 있음

2) 종합검진 항목

검진 한도 금액, 세부검진 항목 등은 매년 별도 품의하여 확정함.

3.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전 임직원(본인, 배우자, 만 25세 이하의 자녀)

2) 적용대상 의료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5만원 초과분의 100%를 다음 각항에 의거 지원함.

- 가. 건강보험법상 적용되는 상병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 나. 건강보험 급여항목(건강보험 수가 적용 항목)을 적용 받는 본인 부담금 전액
- 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다음표의 적용율 적용

항목	상세내용	적용율	비고
	식대, 지정진료비, 병실료	100%	
- - - - - 공통	CT, MRI, 초음파, 내시경	100%	검사 후 의사의 이상발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레이져수술/검사료,재료대, 수혈대,주사대,물리치료, 비급여 약대	100%	보청기, 의수족, 의안, 콘텍트 랜즈 등 재료비 제외
치과	보철료 등(비급여 항목)	50%	본인 치료비만 해당 3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약국	치료목적의 약제비	100%	의사처방전 첨부
સ્ત્રી તો લો	의료보험 적용항목	100%	일부침술,지정진료에 한함
한의원 	비급여 대상 한약	제외	
산부인과	임신(검사,진찰),분만비	100%	영양제/주사 및 출산아 관련 비용제외

3) 지워 제외

- 가. 타 제도(산재,자동차 등)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
- 나.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및 수술(미용, 성형, 예방접종, 건강진단)
- 다.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보약)
- 라. 통상적인 의료비보다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마. 배우자의 직장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부가 당사에 함께 재직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4) 청구 및 지급 절차

- 가. 의료비 청구시효: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나. 매월 15일까지 의료비 신청서에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의료비 지급 심의를 거쳐 당월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함

4. 경조금 및 경조휴가

1) 지원기준

구 분		경조금 (월기본급 기준)	휴가	화환	장례용품	장례인력
	본인	100%	5일	0		
결혼	자녀	100%	2일	0		
	형제·자매(본인,배우자)	50%	1일			
	본인/배우자	100%	1일			
회갑	부모(본인,배우자)	100%	2일			
	조부모 (본인)	50%	2일			
칠순	부모(본인,배우자)	50만원	-			
	본인사망	200%		0	0	0
	배우자상	100%	5일	0	0	0
	부모상/승중상	100%	5일	0	0	0
	배우자 부모상	100%	5일	0	0	0
조위	자녀상	100%	5일	0	0	0
2 H	형제·자매상(본인)	50%	3일			
	형제·자매상(배우자)	25%	2일			
	조부모상(본인)	50%	3일			
	외조부모상(본인)	30%	2일			
	백숙부모상(본인)	25%	3일			
기타	화재 또는 풍수해	200% 범위 내				

- 주) 가. 근속년수 1년 미만자는 기준 지급율의 50%를 적용함
 - 나. 재혼시에는 지급율의 50%를 적용함
 - 다. 여사원이 결혼을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혼할 경우 결혼 경조금 100%지급
 - 라. 경조화환은 100,000원 내외로 함
 - 마. 월기본급: 기본연봉/22(임원), 기본연봉/20(사원)
 - 바. 장례용품 지원: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1회 2박스 지원
 - 사. 장례인력 지원(택 1)
 - 장례지도사 1인(3일) + 도우미 3인(1일 10시간)
 - 장례지도사 1인(1일) + 도우미 5인(1일 10시간)

2) 청구 및 지급 절차

경조금 지급 신청서에 경조사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전표처리 후 본인계좌로 입금처리 함

5. 학자금

1) 지원기준

구분	대 학 (교)	중,고등학교		
지원대상	전국 대학(교) 취학한 자녀를 둔 임직원	국내외 중,고등학교(예체능고포함) 자녀를 둔 임직원		
수혜자녀수	7	세한 없음		
지급회수	취학학교 학교	l별 정규 학기 수 이내		
7) 0) 7.00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실습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지원금액 범 위				
	○ 등록금 면제 등으로 실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등록금 전액을 지급함.			
	임직원 자녀가 해외 중,고등학교 유학하는 경우:국내 중,고등학교 최고수준 지원			
기 타	임직원 자녀가 해외대학으로 유학하는 경우:국내대학 동일분야(단과대학) 중 최고수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함.			
	이 임직원이 업무상 순직으로 연기회 이상 지급받은 자녀에 계속 지급할 수 있음.	인하여 퇴직한 경우 : 한하여 취학중인 학교 졸업 시까지		

2) 청구 및 지급 절차

- 가. 매월 15일까지 학자금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당월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함
- 나. 단, 배우자의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부부가 당사에 함께 재직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6. 장기 근속상 포상

1) 포상기준

구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GS 상품권 (만원)	250	300	350	400	500	600	600
휴가	5	 일	6	일		7일	

2) 포상방법

가. 포상대상 근속이 도래하는 해의 종무식에서 시상함

7. 카페테리아

1) 지원분야

LG제품구입지원, 및 문화/자기개발 활동

* 문화/자기개발 활동비 지원분야: 수강료(헬스,학원), 도서구입비, 취미/공연/문화 활동 참가비, 시설(콘도,휴양소) 사용료 등

2) 지원방법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항목별로 본인이 선택하여 사용 가능 단, LG 제품구입지원은 41만원 한도임

3) 미사용분의 처리연말 실적 정산 후 차액분은 상품권으로 지급함

4) 처리절차

문화/자기개발 활동비는 카페테리아 사용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전표처리 후 본인계좌로 입금처리 함

※ LG 제품할인 내역(패밀리카드 사용 시 적용)

ユョ	구분 연간구입한도(천원) 구분 소비자가 카드전표금액		지원금액(천원)		
一七			본인 부담분	회사 지원금	
LG전자	1,500 (소비자가의 100%)		1,275 (소비자가 85%)	225 (소비자가15%)	
LG패션	1,200 960 (소비자가의 80%)		804 (소비자가의6 7 %)	156 (소비자의 13%)	
LG생활 건강	300 270 (소비자가의 90%)		240 (소비자가 80%)	30 (소비자가의 10%)	

8. 상해보험

1)가입대상: 전 직원 (임원상해보험 별도 가입)

2) 가입내용: 全 직원의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3) 주요 보장내역

보장내용	보장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100백만원 / 최고 79백만원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100백만원 / 최고 79백만원
질병사망위로금	50백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	20백만원
허혈성심장 질환 진단	20백만원
암 사망위로금	50백만원
암/기타암 진단급여금	20백만원/4백만원(1회지급)
암/기타암 수술급여금	2백만원/4십만원
상해/질병 입원급여금	3만원(일) : 180일 한도

9. 개인퇴직연금(IRP)지원

1) 지원 내용: 임직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개인퇴직연금 지원

2) 지원 금액: 임직원이 적립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회사 지원분 적립함 단, 최대 月 25만원 한도로 지원함

10. 주택 자금 대출 제도

- 1) 대출 내용: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 혹은 임차 계약 시 대출 지원 (무주택자에 한함)
- 2) 대출 한도: 5천만원
- 3) 대출 금리: 1.00%
- 4)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원리금은 급여에서 공제함
- 5) 구비 서류
 - 주택 자금 대출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신규 주택으로 전입 확인용)
 -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구입 또는 임차)
 - 주택 매매/임차 계약서 사본
 - 무주택자 확인용(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6) 청구 및 지급 절차
 - 주택 매매/임차 계약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제출 후 입금 요청일에 급여 계좌로 지급함

부칙

-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8년 7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